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구 미 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7.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무을농악[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2017.1.5.)]의 전승보전을 위해 전수교육장을 마련하고 시민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구)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를 매입코자 함.

○ 주륙사 폐탑지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2014. 3월 실시한 문화재특별점검 결과(E등급)에 따라 주륙사 폐탑[도 문화재자료 제295호(1994.9.29.)]이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을 매입하여 주륙사 폐탑의 문화재적 가치의 홍보 및 지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를 위해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산동면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의료법인 산동의원」해산으로 정관에 따라 2014년 국가로 귀속되었으나, 현재 산동보건지소 및 어린이집으로 이용 중인 산동면종합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 도모 및 건강관리와 여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

기존 해평면 게이트볼장이 국가산업5단지에 편입·철거되어 해평면 월호리 167-1번지 일부를 매입, 대체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 구미하수처리장은 2010년 이후 점차적인 하수량 증가로 시설용량 ($Q=330,000\text{m}^3/\text{일}$)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목표연도 2020년 유입하수량이 $380,773\text{m}^3/\text{일}$ 로 시설용량 116% 초과하고 기존 부지의 협소로 부지 내 증설이 어려워 용량 초과분 $55,000\text{m}^3/\text{일}$ 처리를 위한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함.
- 하수처리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조속한 시일내 건설이 어려워 재정부담 완화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하수처리장 신설을 민간투자사업 (BTO)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낙동강수질 보전에 힘쓰고자 함.

○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교리지구, 교리2지구 및 이문지구 등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하수량 증가 요인이 다수 발생하여 ‘구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선산하수처리장을 증설함으로써, 생활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구미하수처리장 운영부하 가중(가동율 112%)의 큰 부하를 차지하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 녹조예방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낙동강 수질오염 총량 3단계 도입(2016년)에 따른 오염삭감시설 설치로 구미5국가 산업단지 규모의 개발 할당량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 위 치 : 구미시 무을면 무이리 160외 6필지
- 대 상 : 토지 8,384m²(2,536평)
건물 지상1~2층, 6동 / 연면적 1,011.12m²(305.8평)
- 기준가격 : 550백만원
 - 토지 212.7백만원(공시지가)
 - 건물 337.3백만원(시가표준액)

☐ 주륙사 폐탑지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 위 치 :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123
- 대 상 : 토지 1,983m²(599.8평)
- 기준가격 : 0.6백만원(공시지가)

☐ 산동면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 위 치 :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105-3번지 외 2필지
- 대 상 : 토지 2,198m²(665평)
- 기준가격 : 1,216백만원(공시지가)

☐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

- 위 치 :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167-1
- 대 상
 - 토지 9,077m² 중 5,000m²
 - 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 조성 1식
- 기준금액 : 492백만원

- 토지 92백만원(공시지가)
- 시설물 400백만원(시설비)

□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구미시 오태동 172-3외 51필지
- 대 상 : 토지 66,545m²(20,130평)
 건물 지하2층, 지상2층/연면적 5,414m²(1,637평)
 하수처리시설 1식(시설용량 55,000m³/일)
- 기준가격 : 85,500백만원
 - 토지 2,900백만원(공시지가)
 - 시설 82,600백만원(시설비)

□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 위 치 :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751, 752
- 대 상 : 토지 5,680.6m²(1,781평)
 건물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795.86m²(240.7평)
 하수처리시설 1식(시설용량 2,000m³/일)
- 기준가격 : 11,619백만원
 - 토지 134백만원(공시지가)
 - 시설 11,485백만원(시설비)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위 치 : 칠곡군 석적읍 중리 872번지 일원
- 대 상 : 건물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1,785m²(540평)
 가축분뇨처리시설 1식(시설용량 150m³/일)
- 기준가격 : 17,550백만원(시설비)

【처분재산】

□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 위 치 : 구미시 무을면 무이리 160외 6필지
- 대 상 : 건물 지상1~2층, 5동/ 927.12㎡(280.4평)
- 기준가격 : 309.3백만원(시가표준액)
- 기타사항 : 2013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하거나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 받음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28건		116,827.6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14건 6건	23,245.6 1,011.12	1,655.3 337.3
	2.기부 채납	토지 건물 기타	1건 1건 1건	66,545 5,414 1식	2,900 82,500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건 3건	2,580.86 3식	29,435
	계		5건		309.3
처분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철거	토지 건물 기타	5건	927.12	309.3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총계				116,827.6				
소계				550.6				
취득	토지	무을면 무이리 160	5,841	148.2	2019년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경상북도 (교육청)	매입
	"	무을면 무이리 160-1	106	2.7	"	"	"	"
	"	무을면 무이리 139-1	952	24.1	"	"	"	"
	"	무을면 무이리 137-1	26	0.7	"	"	"	"
	"	무을면 무이리 139	1,139	28.9	"	"	"	"
	"	무을면 무이리 140-3	122	3.1	"	"	"	"
	"	무을면 무이리 670-12	198	5	"	"	국(교육부)	"
	건물 (교실)	무을면 무이리 160, 139, 139-1, 670-12	777.6	259.4	2019년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경상북도 (교육청)	"
	건물 (화장실)	"	22.5	7.5	"	"	"	"
	건물 (창고)	"	43.65	14.6	"	"	"	"
	건물 (사택)	"	50.85	17	"	"	"	"
	건물 (숙직실)	"	32.52	10.8	"	"	"	"
	건물 (체험실)	"	84	28	"	"	경상북도 교육감	"
	토지	도개면 다곡리 산123	1,983	0.6	2018년	문화재보호 구역 매입	국(산림청)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소계				116,277				
취득	토지	산동면 적림리 105-3	1,321	731	2020년	산동면종합 복지회관부지	국 (기획재정부)	매입
	"	산동면 적림리 105-20	727	403	"	"	"	"
	"	산동면 적림리 105-21	150	82	"	"	"	"
	"	해평면 월호리 167-1	5,000	92	2018년	게이트볼장 설치	문영길	"
	기타	"	1식	400	"	"	구미시	신 설
	토지	오태동 172-3 외 51필지	66,545	2,900	2020년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구미맑은물 주식회사	기부 채납
	건물	"	5,414	82,600	"	"	"	"
	기타	"	1식					
	토지	선산읍 화조리 751	2,622.3	62	2020년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이윤배	매입
	"	선산읍 화조리 752	3,058.3	72	"	"	문이기	"
	건물	선산읍 화조리 751, 752	795.86	11,485	2020년	"	구미시	신 설
	기타	"	1식					
	건물	칠곡군 석적읍 중리 872	1,785	17,550	2019년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설치	구미시	"
	기타	"	1식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m²)					
계			927.12	309.3				
처분	건물 (교실)	무을면 무이리 160, 139, 139-1, 670-12	777.6	259.4	2019년	안전점검결과 D등급 재건축 필요	경상북도 (교육청)	철거
	건물 (화장실)	"	22.5	7.5	"	"	"	"
	건물 (창고)	"	43.65	14.6	"	"	"	"
	건물 (사택)	"	50.85	17	"	"	"	"
	건물 (숙직실)	"	32.52	10.8	"	"	"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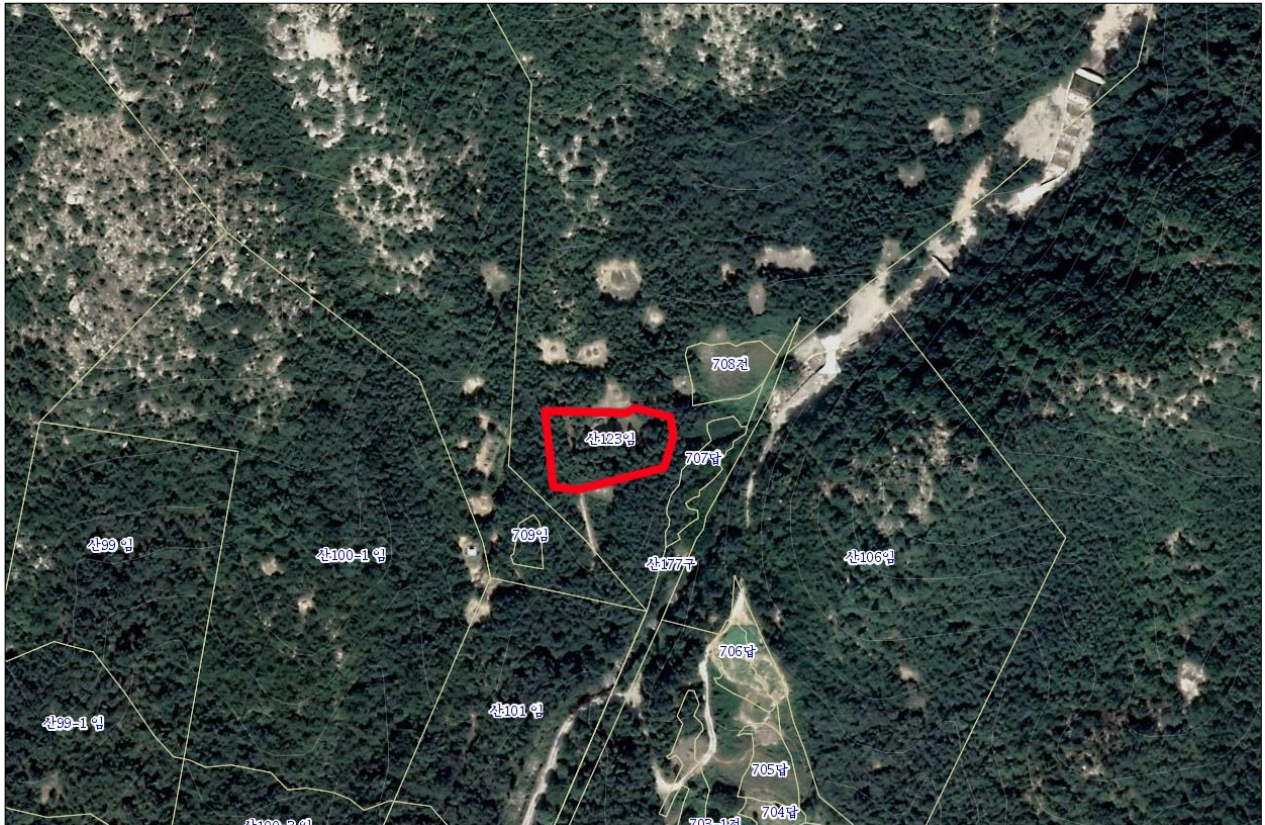
□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매입

○ 소재지 : 구미시 무을면 무이리 160번지 외 6필지



□ 주륙사 폐탑지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 소재지 :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산123번지



□ 산동면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

○ 소재지 :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105-3번지 외 2필지



□ 해평면 게이트볼장 설치

○ 소재지 :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167-1번지



□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구미시 오태동 172-3 외 51필지



□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 소재지 :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751번지 외 1필지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 소재지 : 칠곡군 석적읍 중리 872번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이 관 응
	담 당	현 명 숙
	담 당 자	전 유 향 (480-5072)